

요양 시설 입소와 공공 후견청이 하는 일

PGT와 상호 협력하는 평가자와 매니저
및 PGT가 대리 결정권자인 성인을
위한 정보



PUBLIC GUARDIAN
AND TRUSTEE OF
BRITISH COLUMBIA

요양 시설 입소와 PGT의 역할

이 소책자에서는 **의료(동의) 요양 시설(입소) 법(Health Care (Consent) and Care Facility (Admission) Act)**과 관련 규정의 요양 시설 입소 조항을 설명하고 보건부(Ministry of Health) 정책을 약속합니다. 또한, 공공 후견청(Public Guardian and Trustee, PGT)이 대리 결정권자로서 하는 일도 설명합니다. 이 책자는 PGT와 상호 협력하는 평가자와 매니저 및 PGT가 대리 결정권자인 성인을 위하여 마련되었습니다.

일반 규칙

성인은 충분한 설명과 이해에 의한 동의로만 인가된 요양 시설에 입소할 수 있습니다. 성인에게 의사 결정 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명되면, 충분한 설명과 이해에 의한 동의는 반드시 대리 결정권자로부터 받아야 합니다.

성인, 가족, 의료/사회 복지 제공자가 알아야 할 법의 내용

요양 시설 입소 신청

성인 또는 그 성인이 의사 능력이 없는 경우 그의 대리인은 지역 보건 당국에서 일하는 매니저나 민영 요양 시설 운영 담당 매니저에게 요양 시설 입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 정부의 [장기 요양 이용 지침\(제6D장\)](#)에 따라, 성인 또는 그 대리인은 해당 성인이 지역 사회에서 더는 안전하게 지원을 받을 수 없을 때 공적 보조금이 지원되는 선호하는 장기 요양원이나 임시 요양원을 최대 3군데까지(일부 경우 그 이상) 선택할 수 있습니다.

무슨 종류의 시설이 이 법의 적용을 받나요?

다음과 같은 인가된 장소가 해당합니다.

- 장기 요양원(long term care home)
- 단기 일시 보호소(short term respite care setting)
- 호스피스
- 재활원/요양소(rehabilitation/convalescent setting)
- 정신 건강 및/또는 물질 오남용 문제가 있는 성인을 위한 위기 중재/안정, 해독, 평가 및 치료 또는 주거형 요양 서비스

요양 시설 입소를 동의, 거부 또는 취소할 성인의 권리

대부분 성인은 적절히 의사소통하고 필요한 정보와 지원이 있으면 자력으로 요양 시설 입소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반드시 먼저 해당 성인에게 가서 결정을 받아 내야 합니다. 의사 능력이 있는 성인은 요양 시설을 떠날 결정도 할 수 있습니다.

성인이 동의 여부를 표시할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성인이 결정할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여 동의를 받을 책임이 있어 우려되는 매니저는 해당 성인에게 법원이 지정한 무능력자 신변 관리 후견인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해당 성인에게 무능력자 신변 관리 후견인이 없다면, 매니저는 해당 성인의 의사 능력 부존재 여부를 반드시 평가하여야 합니다. 해당 성인이 동의 여부를 표시할 의사 능력이 없는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 매니저는 다음과 같이 요양 시설 입소를 결정할 자격이 있는 의사 결정권자 중 첫 번째로 적합한 자를 반드시 선정하여야 합니다.

- 대리 동의법(Representation Agreement Act) 제9조에 따른 해당 성인의 대리인
- 해당 성인의 배우자
- 해당 성인의 자녀
- 해당 성인의 부모
- 해당 성인의 형제 또는 자매
- 해당 성인의 조부모
- 해당 성인의 손주
- 그밖에 해당 성인과 출생 또는 입양 관계가 있는 자
- 해당 성인의 친지
- 혼인에 의하여 해당 성인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자

요양 시설 입소를 결정할 피선정인의 자격

- 최소 만 19세
- 이전 12개월간 해당 성인과 연락하거나 접촉하며 지냄
- 해당 성인과 분쟁이 없음
- 대리 동의를 하거나 거부할 의사 능력이 있음 그리고
- 대리 결정권자의 의무를 준수할 의향이 있음

대리 결정권자의 의무는 무엇인가요?

해당 성인의 요양 시설 입소(또는 잔류) 여부를 동의하기 전에 대리자는 반드시

- 해당 성인 및 그가 도움을 청하는 배우자나 친지, 친척과 상의하거나 상의할 타당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또한
- 해당 성인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는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최선의 이익이 되는 결정이란 무엇인가요?

해당 성인의 최선의 이익 판정 시 모든 대리자는 반드시 다음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 해당 성인의 현재 소원, 이전에 표현한 소원, 가치관, 신념
- 해당 성인이 요양 시설 입소로 얻을 수 있는 유익 여부 그리고
- 요양 시설 입소 이외의 방책 또는 제한이 덜한 종류의 요양 시설 존재 유무와 적합성 여부

모든 대리자는 해당 성인에게 받을 자격이 있고 충분한 설명과 이해에 의한 결정에 필요한 모든 정보와 문서를 받아 볼 권리가 있습니다. 대리자는 해당 성인이 동의하지 않을 수 있는 결정이라도 해당 성인의 최선의 이익을 위하여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성인이 의사 능력 부존재 결정에 반대하면 어떻게 하나요?

평가에 이의를 제기하는 해당 성인은 매니저에게 또 다른 평가자에게 2차 평가를 받게 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최초 평가자가 의사나 전문 간호사가 아니었다면 2차 평가자는 반드시 의사나 전문 간호사이어야 합니다.

해당 성인 또는 그를 대신하는 다른 사람들은 매니저에게 먼저 말하여 지역 보건 당국의 조치에 반대할 수 있습니다. 불만 사항은 불만이 발생하는 시점과 장소에서 가장 잘 다루어지고 해결됩니다. 매니저와 해당 문제를 상의한 후에도 불만 사항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이면 관할 [환자 진료 품질 사무소](#)에 연락할 수 있습니다.

해당 성인 또는 그를 대신하는 다른 사람은 인가된 요양 시설에서 발생하는 일에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시설을 담당하는 [지역 사회 요양 허가 담당관](#)에게 연락하면 됩니다.

옴부즈퍼슨 사무소(Office of the Ombudsperson)는 BC주 공공 기관과 관련한 불만 사항을 조사할 권한이 있습니다.

기타 법적 구제 방법이 있나요?

다음에 해당하는 개인은 법원에 지시나 명령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성인의 대리인 또는 무능력자 신변 관리 후견인
- 대리 결정권자로 선정된 자 또는
- 요양 시설 입소 동의 여부에 대한 의사 능력이 없는 것으로 평가된 성인

법원은 다음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성인의 의사 능력 부존재 여부 평가 및
- 대리자의 요양 시설 입소 결정 확인, 파기 또는 변경

응급 상황 시 성인을 요양 시설에 들어가게 할 수 있나요?

의사 능력이 있는 성인은 응급 상황에서 입소를 동의하거나 거부할 수 있습니다.

성인이 의사 능력이 없다고 평가되면, 매니저는 그 성인의 생명을 보존하거나, 정신 또는 신체 손상을 방지하거나, 타인의 심각한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즉시 입소가 필요한 경우 동의 없이 성인을 입소시킬 수 있습니다. 매니저는 72시간 안에 대리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지원과 원조를 구할 능력이 없는 성인이 심각한 위험에 처하여 지정 기관(지역 보건 당국)의 직원이 해당 성인을 학대나 방임, 자기 방임에서 보호하려고 요양 시설로 옮기는 경우, 매니저는 해당 성인을 동의 없이 입소시킬 수 있습니다. 매니저는 72시간 안에 대리 동의 및 의사 능력 부존재 여부 평가가 이미 완료되지 않았다면 입소 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성인은 요양 시설을 떠날 수 있나요?

의사 능력이 있는 성인이 퇴소를 원하거나 그 성인의 대리자가 퇴소를 원하면, 매니저는 대리자가 해당 성인을 학대하거나 해롭게 할 것 같이 행동한다고 믿을 타당한 이유가 없는 한 해당 성인의 퇴소를 반드시 허용하여야 합니다.

의사 능력이 없다고 평가된 성인이 요양 시설 퇴소를 원하면, 매니저는 잔류에 대한 대리 동의를 타당한 시간 안에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해당 성인이 지난 30일 사이에 입소하였거나 지난 90일 사이에 잔류 동의를 받은 경우는 예외입니다.

의사 능력이 없다고 평가된 성인이 요양 시설 퇴소를 원하고 매니저는 보호 중인 그 사람에게 지금은 잔류 여부에 동의할 능력이 있을 수 있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다면, 매니저는 보호 중인 그 사람이 타당한 시간 안에 반드시 평가를 받게 하여야 합니다.

결정할 사람이 아무도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순위별 대리 결정권자 명부에서 요양 시설 입소나 잔류를 결정할 시간이나 의향 또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경우 또는 선정 순위가 같은 대리자 사이에 분쟁이 있는 경우, 매니저는 PGT에 반드시 연락하여야 합니다.

성인, 가족, 의료/사회 복지 제공자가 알아야 할 PGT의 역할

PGT에 언제 연락해야 하나요?

다음과 같은 경우 매니저는 PGT에 연락하여야 합니다.

- 성인이 요양 시설 입소 또는 잔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데 그런 결정을 할 의사 능력이 없는 것으로 평가된 경우
- 시간과 의향, 자격이 있는 대리 결정권자가 없는 경우 또는
- 선정 순위가 같은 대리자 사이에 분쟁이 있는 경우

PGT는 매니저가 연락하면 무슨 일을 하나요?

연락을 받으면 PGT는 다음을 할 수 있습니다.

- 시간, 의향, 자격이 있는 자에게 요양 시설 입소 결정 권한을 부여 또는
- 대리 결정권자가 되어 요양 시설 입소 여부를 결정

PGT는 언제 대리 결정권자에게 권한을 부여하기로 하나요?

PGT는 해당 성인과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대개 그 성인을 따뜻한 마음으로 가장 잘 돌본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PGT는 요양 시설 입소 결정이 결정 당시는 물론 미래에도 성인과 그 가족에게 큰 영향을 준다는 사실도 인정합니다. PGT는 순위가 같은 가족 구성원 중에서 대리자를 승인하기로 결정하기도 합니다.

PGT는 언제 대리 결정권자 역할을 하나요?

PGT는 다음 경우에 대리 결정권자로 행동합니다.

- 순위가 같은 대리자 사이에 누구를 선정할지 불분명한 경우 또는
- 해당 성인에게 요양 시설 입소 여부를 결정할 의향과 자격이 있는 사람이 현재 아무도 없는 경우

PGT는 대리자로서 모든 대리 결정권자의 의무를 다하고 해당 성인의 최선의 이익을 위하여 결정할 책임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해당 성인이 동의하지 않는 결정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PGT가 대리 결정권자로서 해당 성인의 최선의 이익을 위하여 결정할 때 무슨 조치를 먼저 취하나요?

- 해당 성인의 의료 상황, 소원, 관심사, 재정, 문화적 배경, 사회적 상황에 관한 정보 등 결정에 필요한 관련 문서와 정보를 요청합니다.
- 해당 성인 및 도움을 청하는 가족과 친지와 상담합니다. 해당 성인 및/또한 제안된 시설 방문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요양 시설이 개입이 가장 적은 곳인지 또는 해당 성인의 필요를 가장 효과적으로 충족하는 수단인지 아니면 더 적합한 그밖의 대안이 있는지 고려합니다.
- 매니저가 제공한 요양 시설 목록에서 해당 성인을 돌보는 데 필요한 것들을 가장 잘 충족하고 개인의 상황에 가장 잘 맞을 수 있는 곳을 조사하고 평가합니다.
- 해당 개인의 재정을 관리하는 사람과 협의하여 해당 성인의 재정적 여유를 판단합니다. 일부 상황에서 PGT는 해당 성인의 무능력자 재산 관리 후견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 하나 이상의 선호 요양 시설에 대한 동의가 포함될 수 있는 결정을 매니저에게 제공합니다.

해당 성인이 이용할 수 있는 선호 요양 시설이 있거나 없다고 통지할 때 PGT는 무슨 조치를 취하나요?

- 그 시설에 들어가는 것이 해당 성인의 필요 충족에 여전히 가장 좋은 옵션이며 순위가 더 높고 자격이 있는 대리자가 없음을 재확인합니다. 그리고
- 선호하는 주거를 기다리는 동안 해당 성인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아마 임시 요양 시설 입소에 동의할 것입니다.

PGT가 그밖에 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PGT는 자격은 있으나 의향이나 시간이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면 해당 성인의 임시 대리 결정권자로 행동하기도 합니다. PGT는 해당 성인에게 의사 능력이 없으면 의료 동의 조항에 따라 의료 결정을 합니다. 이것은 요양 시설 입소 절차와 다른 별개의 절차입니다.

PGT는 해당 성인에게 재정 관리 능력이 없고 대리 재정 관리자로 지정된 사람도 없어 우려될 때는 재정 조사도 개시할 수 있습니다.

응급 입소 시 PGT는 무슨 일을 하나요?

해당 상황이 응급 상황이라고 인정되면 PGT는 단기 동의를 통하여 해당 성인의 안전을 보장하면서 정상적인 조사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해당 성인이 시설 퇴소를 바라면 PGT는 어떻게 하나요?

PGT가 시설 잔류 여부 결정 요청을 받으면 입소 여부 결정 시와 똑같은 의무가 적용됩니다. 직원이 해당 성인과 상담하여 퇴소를 원하는 이유를 확인하고 개입이 덜한 옵션이나 또 다른 요양원, 기타 지원을 권할지 판단합니다.

시설 입소 여부 대리 결정권자로서 PGT가 하지 않는 결정은 무엇인가요?

PGT는 대리 결정권자로서 오직 요양 시설 입소 및 잔류에 관한 결정만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권한이 있다고 해서 대리자가 다음에 관한 결정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해당 성인의 재정 - 입소 결정을 한다고 해서 PGT가 주거형 요양 시설 사용자 요금 납부 결정도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단, PGT가 필요한 재정 관련 결정권자로 별도 지정되기도 합니다).
- 정보 공유
- 의료 결정(단, 해당 법의 의료 동의 조항에 따라 임시 대리 결정권자로서 의료 결정을 하기도 합니다).
- 억제 수단 이용

PGT가 대리 결정권자 역할을 할 때 비용이 있나요?

아니요, PGT는 요양 시설 입소를 위하여 대리 결정권자를 승인하거나 직접 대리 결정권자로 행동할 때 요금이나 비용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PGT가 내린 요양 시설 입소 결정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위에 언급한 구제 방법 외에도 PGT에는 내부적인 이의 신청 절차가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 컨설턴트 (Regional Consultant)에게 문의하시거나 저희 웹사이트 www.trustee.bc.ca/pages/feedback.aspx를 보십시오.

이의 신청에 대한 PGT의 반응이 만족스럽지 않으시면 BC 옴부즈퍼슨에 1.800.567.3247로 연락하시거나 www.bcombudsperson.ca를 방문하여 우려 사항을 전달하셔도 됩니다.

공공 후견청 연락처

개인 의사 결정 서비스(Personal Decision Services, PDS)

- ☎ 무료 전화 1.877.511.4111
- ☎ 시내 604.660.4507
- ☎ 무료 전화 1.855.660.9479
- ☎ 시내 604.660.9479
- @ 이메일 AIS-PDS@trustee.bc.c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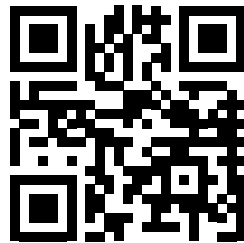
PDS 근무 시간 월요일~금요일 오전 8:30~오후 4:30
휴일 및 주말 오전 8시~정오

무료 전화

무료 전화는 서비스 BC(Service BC)를 통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지역 번호로 전화하신 후 공공 후견청(Public Guardian and Trustee)과
통화하고 싶다고 하십시오.

- ☎ 밴쿠버 604.660.2421
- ☎ 빅토리아 250.387.6121
- ☎ BC주 내 기타 지역 1.800.663.7867

www.trustee.bc.ca



중요 메모: 이 간행물은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공공 후견청이 제공하는 것입니다. 법적 요건을 언급하지만 법률상의 조언은 아닙니다. 일반적인 정보일 뿐 법률상의 조언을 대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양 시설 입소 관하여 법률상의 조언이 필요한 분은 변호사나 법률 공증사 또는 거주지 법률 사무소에 연락하십시오.